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3134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이요흠

변 론 종 결 2021. 6. 21.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7

[예비적 청구]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을 94,829,115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829,1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4.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8. 3.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초하여 C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나. 이후 2차례에 걸친 조건변경으로 최종 보증기한이 2020. 7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은 피고가 하기로 하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2020. 7. 6. 피고와 재산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17061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2020. 7. 6.경 약 220,000,000원 정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피고는 당시 B이 그 외에도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더라도 자동차 할부금 채무, 1) 노후화 등으로 큰 재산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85,800,000원,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46,995,440원,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26,680,000원과 카드사 대출금 등 합계 328,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나. 피고

혼인 생활 중 자신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B과의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도 몰랐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B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8. 19. C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86,297,984원(85,970,814원 + 263,930원 + 63,24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비록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3)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타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

피고는 B와의 혼인 기간 중 2015. 8.경 모친인 H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오산시 I아파트 J호(취득가액 220,000,000원)를 매수 취득하고, 2019. 8. 14. 오산시 K건물 L호 상가(취득가액 약 312,000,000원)를 분양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아가 I아파트 J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75만 원에 임대하였다. 반면, K건물 L호 상가를 담보로 한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1억 4,600만 원)와 I아파트 J호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1억 원)가 있어 채권최고액을 그 채무액으로 보더라도 약 286,000,000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B이 피고와 혼인하기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B과 피고의 결혼 기간(약 6년 6개월) 동안 피고의 재산은 순수하게 증가하였던 반면,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혼이 B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이혼 사유로 시댁과의 갈등, 부부간 성격 차이, 피고 본인의 정신건강 등을 들고 있는데, B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이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것이고, 미성년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음을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와 부부로 함께 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2

[별지 목록]

부 동 산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

1층 463.6412㎡

2층 458.7260㎡

3층 458.7260㎡

4

1) 갑 제11호증(신용통합정보조회)에 따르면 F에 대한 중고차할부금 채무로 20,302,000원의 채무가 있음이 확인된다.